

대구지방법원 2024. 12. 4 선고 2023나3264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4. 12. 4 선고 2023나326450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25 선고 2022가소31235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김효명

피고, 항소인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안혜림

변론 종결2024. 11. 6.

판결 선고2024. 12. 4.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25. 선고 2022가소31235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56,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3. 3.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34,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은 1934. 6. 5.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C 토지' 등 그 지번만으로 지칭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7. 6. 9. 위 각 토지를 상속받은 후 1987. 11. 9.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2005. 9. 15.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66년경 이 사건 C 토지와 인근 토지 일대에 'E'라는 저수지를 조성하였는데, 위 C 토지는 E 조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E의 부지 중 일부로 이용되고 있다.

다. 피고는 1981. 3. 11.경 이 사건 F, G, H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나머지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는 E에 접한 토지에 관하여 E 확장공사를 실시하여 같은 해 5. 29. 준공하였는데, 이 사건 나머지 토지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E의 부지 일부 및 제방과 그에 접한 농로로 이용되고 있다.

라. 피고는 E를 조성하고 확장공사를 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유지·보수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내지 4, 갑 3호증, 을 1, 2, 3, 5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저수지인 E의 부지 및 그 제방과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농로로 조성하여 관리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저수지 부지, 제방 또는 농로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私人)]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이 아닌 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된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을 1 내지 3, 8, 내지 13호층, 을 4호층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E 인근에 다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C 토지는 1966년경 그 인근 토지와 함께 저수지인 E로 조성된 이후 망인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에게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저수지 용도로 제공되었고, 그에 따라 인근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민들은 이 사건 C 토지가 포함된 E를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로 무상으로 사용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1981. 3. 11.경 E 확장공사를 시행하였는데, 당시 망인을 포함하여 E 인근에 농지를 소유한 토지소유자들이 "소류지 확장공사1)에 있어 부담금 과중으로 상단부 확장부지대는 포기하기로 결의하고 제방성토 용지대 부담금은 1981. 3. 11. 동회 결의에 의하여 몽리자2)가 부담할 것을 별지 서명 날인하여 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그 아래에 기명 날인하여 이를 E 소재지인 I의 면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 망인이 E 인근에 몽리농지를 소유한 자로서 위 확장공사 당시 E의 제방 등으로 편입되는 이 사건 나머지 토지를 피고나 인근 주민들이 저수지 제방 등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C 토지는 E 조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E의 부지 일부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망인이 위 확장공사 당시 제방 등에 편입되는 이 사건 나머지 토지를 피고나 인근 주민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1966년경 E가 조성될 당시부터 위 C 토지에 관하여도 피고나 인근 주민들이 E 부지 일부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으로 추인되는 점, ④ 피고는 E를 E구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하여 관리해 왔는데, 망인 및 그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E 부지와 제방 등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E 조성 및 확장공사 무렵부터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수십년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용료 청구 등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신 소유 토지를 포함한 인근 농지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와 그 제방 등의 시설로 제공하여 인근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들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위 각 토지에 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인 원고 역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체인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토지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라. 원고의 사정변경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설령 망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E가 있는 J 일대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되고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한 2000년 또는 'K공단'이 조성되기 시작한 2004년경부터는 E 인근에 수많은 공장이 들어서 농지가 거의 없어지면서 E는 저수지로서의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위 각 토지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으므로, 원고는 그 때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수익 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2) 관련 법리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은 해당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됨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그 토지를 제공할 당시의 객관적인 토지이용현황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소유자가 일반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그 토지를 제공할 당시 이러한 변화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사용·수익권 행사가 계속하여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을 때부터는 다시 사용·수익 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위치와 물리적 형태,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게 된 동기와 경위, 해당 토지와 인근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토지이용상태가 바뀐 경위와 종전 이용 상태와의 동일성 여부 및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허용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신뢰가 침해될 가능성 등 전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갑 5 내지 11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E 조성 당시나 확장공사 무렵 그 인근 토지는 대부분 농지였으나, 이후 E가 소재한 지역이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 인근 토지에 상당수의 공장이 들어서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14, 15호증, 을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E는 현재도 저수지의 성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여전히 E의 부지 일부 및 제방, 인근 농로로 이용되고 있는 점, ② 현재까지도 E 인근에 일부 농지가 남아 있어 E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점, ③ 피고는 E를 최근까지도 저수량 16,200m³, 관개면적 7ha의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 관리하면서 2018. 11.경 그 보수공사를 하고 2023. 3분기까지 분기별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해오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소유자라고 하여도 E가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저수지 등으로 사용·제공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3818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인근 토지상 공장설립 등으로 인한 E의 농업용수 공급기능의 일부 축소 등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다거나, 사용·수익권 행사가 계속하여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점유·사용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신안재

판사이재덕

판사박만호

별지

- 1) "확창공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고, 뒤의 "확창부지대"도 마찬가지로 오기로 보인다.
- 2) "목리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